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34670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346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0539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4.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0539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1행의 “2차계약금 입금 시 정식 계약서” 부터 제5면 7행의 “반증한다고 보아야 한다.”까지를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주장

원고는 2020. 6. 2. 피고가 계약 체결을 위해 알려준 장소인 남양주시 내 공장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확인한 부직포 원단은 비밀 차단이 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새로운 샘플과 생산 공장을 확인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로 ‘2차 계약금 입금 시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특약한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가계약이므로 원고가 해제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에는 계약 당사자, 물품 대금, 물품 공급 수량, 공급 기한 및 대금 결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가계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보여준 부직포 원단을 어떠한 과정에 따라 비밀 차단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원단샘플과 생산 공장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마스크 제작 목적의 부직포가 비밀 차단이 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볼 것인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비밀 차단이 되지 않는 부직포를 확인하였음에도 계약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적지 않은 금액인 5천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2020. 9. 18. 이전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시험성적서 및 MSDS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 18.경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급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돈으로 돌려주거나 해결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부직포 공장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를 몇 번이나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갑 제3호증)된 것 이외에는 원고가 2020. 9. 18.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MSDS 자료 중 MSDS 자료는 작성 주체인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에 발행한 자료가 아니고, 그 내용 역시 마스크용 부직포에 관한 자료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따르면 MSDS 자료상 ‘OEP01’이라는 부직포는 재가공을 통해 마스크 안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와 위 부직포와 관련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1차 계약금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계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자연스럽고, 주식회사 D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차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인 2020. 6. 5.경 마스크용 일반부직포(덴탈마스크 및

일반마스크용)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pH, 노닐페놀 총 함량 등에 관한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과세정보회신에 따르면 어떠한 거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직포 거래와 관계없이 다른 이해관계로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정보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는 주식회사 D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및 형식이 이 사건 공급계약과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공급계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조휴옥, 판사 성지호